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신규조문대비표

2021. 2. 22. 개정 판 (시행 2021. 3. 1.) → 2021. 9. 27. 개정 판 (시행 2022. 3. 1.)

바뀜 4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33/compare?from=1109&to=1325>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7:34:13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교육과정 편성) ①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공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전공 간 공통과목: 관련 전공학과나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하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대학원 공통필수과목: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지정해 놓은 교과목을 말한다. ② 각 학과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학원 공통과목과 전공간 공통과목은 학과 혹은 전공간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한다. ③ 대학원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학생은 대학원 공통필수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개정 2016-09-26>	제20조(교육과정 편성) ①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공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전공 간 공통과목: 관련 전공학과나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하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대학원 공통필수과목: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지정해 놓은 교과목을 말한다. ② 각 학과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학원 공통과목과 전공간 공통과목은 학과 혹은 전공간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한다. ③ 대학원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학생은 대학원 공통필수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개정 2016-09-26> ④ 학과 내 세부전공을 복수로 이수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해당 학과 내규에 따르며 성적증명서와 학위수여(수료) 증명서에 세부전공이 복수로 명기된다. <개정 2021-09-27>
제30조(시험과목의 면제) ① TOEFL 550점(IBT 80점), TOEIC 800점, TEPS 550점, IELTS 5.5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을 면제받는다. 단, 해당 공인영어성적표는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된 지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01-09> ② 석사과정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학위과정변경을 통해 통합과정에 진입한 자는 그 합격과목을 통합과정에서의 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6-09-26> ③ 이중언어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또는 본교 600시간의 한국어과정에 수강중이거나 600시간 이상 수강을 완료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받는다. <개정 2019-06-10>	제30조(시험과목의 면제) ① TOEFL 550점(IBT 80점), TOEIC 800점, TEPS 550점, IELTS 5.5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을 면제받는다. 단, 해당 공인영어성적표는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된 지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01-09> ② 석사과정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학위과정변경을 통해 통합과정에 진입한 자는 그 합격과목을 통합과정에서의 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6-09-26> ③ 이중언어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TOPIK 4급 (<u>예체능 3급</u>) 이상 취득한 자 또는 본교 600시간의 한국어과정에 수강중이거나 600시간 이상 수강을 완료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받는다. <개정 2019-06-10>
제39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은 학과에서 정한 <u>규정</u>에 따른다.	제39조(시험과목) ①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은 학과에서 정한 <u>내규</u>에 따른다. ② 종합시험 신청과목은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과목이어야 한다. <개정 2021-09-27>
제55조(심사위원수와 자격) 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구성한다. ② 부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u>전임강사</u> 이상의	제55조(심사위원수와 자격) 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구성한다. ② 부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u>조교수</u> 이상의 교수,

현 행	개 정 안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인은 본 대학교 <u>전임교수</u> 이어야 한다. ③ 논문 지도교수는 당연히 심사위원이 된다.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인은 본 대학교 <u>조교수 이상</u> 이어야 한다. 단, 예체능계열 학과의 경우 본교 외래교수 예체능계열 임용 기준에 준하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 ③ 논문 지도교수는 당연히 심사위원이 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교육과정 편성) ①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공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전공 간 공통과목: 관련 전공학과나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하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대학원 공통필수과목: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지정해 놓은 교과목을 말한다.

② 각 학과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학원 공통과목과 전공간 공통과목은 학과 혹은 전공간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한다.

③ 대학원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학생은 대학원 공통필수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④ 학과 내 세부전공을 복수로 이수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해당 학과 내규에 따르며 성적증명서와 학위수여(수료) 증명서에 세부전공이 복수로 명기된다.

제30조제3항 중 "4급 이상"을 "4급(예체능 3급) 이상"으로 한다.

제39조 중 "규정"을 "내규"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전임교수이어야 한다."를 "조교수 이상이어야 한다. 단, 예체능계열 학과의 경우 본교 외래교수 예체능계열 임용 기준에 준하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